

# 온라인 매체상의 현대식 마녀사냥 이슈와 ‘유사언론 행위’간 법적·윤리적 논쟁에 대한 고찰

Legal and Ethical Insight about Witch Hunt Issues on Online News and  
'Pseudo Press'

정운갑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MBN 해설위원(앵커)

Woon Gap Jeung(ibona74@naver.com)

## 요약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는 주장에 의거한 온라인 신문 규제 주장 간의 충돌 현상을 법적·윤리적 쟁점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매체 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 유사언론 행위, 사이버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주장의 근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윤리적 논쟁이 되는 반대 의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에 반하는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되는 권리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종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현재 논쟁 중인 온라인 매체상의 뉴스 행위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 중심어 : | 마녀사냥 | 언론의 자유 | 출판의 자유 | 유사 언론 | 사이버 언론 |

## Abstract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rash phenomenon between freedom of press and pseudo press. For that researcher gathered online witch hunt cases from 2012 to 2017 and interpret with the logical basis of argument which needs to control pseudo press activity. On the other hand, present research arranged former studies about freedom of press and right of reputation and privacy as a counterpart that can be ethical debate. Futhermore, court case about right of small independent media where has less than 5 people also gathered. By Comparison of each ethical and legal basis, this study provide the insight which can inspire to think about real right of citizen and press.

■ keyword : | Witch | Hunt | Freedom | Press | Pseudo |

## I. 서론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그리고 사생활 침해의 충돌과 관련한 본 법적 해석은 미국 등지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 혹은 공적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의혹

접수일자 : 2018년 04월 02일

수정일자 : 2018년 04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5월 07일

교신저자 : 정운갑, e-mail : ibona74@naver.com

의 제거나 취재 및 보도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때로는 그 행위가 다소 과할지라도 그 행위에 공익을 위한 목적과 진실한 사실 여부가 인정된다면 언론의 공적 기능을 위해서 그 책임을 크게 묻지는 않았다[1-3].

이러한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제 4항에 의하면 형사 사건에 대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하는 헌법 조항이며, 세부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와 제 325조 무죄의 판결에 의해, 재판의 과정에서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 까지 피고인의 무죄로 추정될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해당 용의자가 범죄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접근하거나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막아주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의 취지는 원칙의 목적에 걸맞게 억울한 희생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4-6].

선행 연구와 고전 이론들이 충분히 진행되어온 언론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윤리적 기준에 대해 다시금 논의하는 것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어떤 현상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언론 윤리에 대한 응용된 고찰과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현상이란 언론 윤리에는 부합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다름 여지가 있는 현상으로, 학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사 및 유관 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이다. 과거 중세시대에 자행된 재판 형식의 학살이, 초자연적 마술이라는 허위적 사실에 근거해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게 대상자를 판결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서부터 미리 사회적 낙인을 찍어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7].

온라인 언론의 저널리즘 일탈적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언론 행위 규제와 무분별한 언론사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의견들 또한 등장하고 있다. 통칭해 '유사언론·사이비언론'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규정과 비판, 규제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유사언론 행위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주협회에서 이뤄지고 있지만[8][9], 정작 '유사언론'이나 '유사언론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학술적 근거가 미흡하다. 관용적 표현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장은 힘을 얻어 언론행위에 대한 규제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무분별한 온라인 뉴스사의 활동에 대해 규제를 취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과 여론의 여파로 2015년 11월 18일 신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는 소규모 온라인 언론사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의 경우에 가능하던 기존의 등록 요건 기준에서 인력을 더 증원시켜야 함과 이에 상시 고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한층 더 과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군소 온라인 신문사들의 과도한 시장 참여와 이로 인한 극심한 경쟁행위를 제한하고자 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보도 자료에서도 심화된 경쟁이 야기한 선정적인 보도와 유사언론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앞서 제시한 유사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여론이 이러한 규제정책을 시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

그러나 이후 해당 정책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해 위배된다는 주장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 역할을 하는 군소 온라인 언론 단체들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부족했다는 비판들이 이어져, 기준 완화 방향으로의 개정 요구와 헌법 소원 등의 비판 여론이 대응 차원에서 일게 되자, 결국 2016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당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39]. 결과적으로 온라인 언론에 대한 기준은 이전과 같이 이어졌고, 황색 저널리즘과 같은 과도한 언론행위에 대해서는 다시금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계의 자정노력과 독자 및 여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유사언론, 그리고 유사언론 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학술적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 과정을 거치거나 연구에 의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써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속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기존의 언론자유에 대해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쉽게 규제 정책의 근거로써 활용되어 실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학계 자체에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유사 언론, 사이버 언론 현상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의 소지와 주장의 합리적 근거 등의 분석 및 검증 차원의 연구는 엄연한 학계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규제 정책이라는 결과물이 등장했다 사라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개념 연구와 논쟁적 여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미흡하다. 이는 학계가 연구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본 연구는 전통적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고 하는 주장 간의 윤리적 논쟁의 세부적 요소들을 비교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사언론행위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권으로 더 이상 보호 받을 수 없는 윤리적 일탈행위의 근거 행위인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에 대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현재 온라인 뉴스를 통해 발생한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으로 칭할 수 있는 2012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발생한 사건들에 해당한다. 이후 유사언론과 유사언론 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분석해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후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유사언론 행위를 규제할 근거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론하였다. 이에 반하는 기존의 전통적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이에 반하는 명예·프라이버시 충돌과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대한 과거 연구들과 최근 다시 원상 복구된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를 다시금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대립하는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온라인 뉴스 행위의 법적·윤리적 논쟁 거리를 고찰하였다.

## II. 본론

### 1. 온라인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유사언론 행위’ 규제 의견의 표출

‘마녀사냥’의 원류는 16-17세기 전후로 유럽에서 마

녀나 악마의 수행자로 지목된 여성, 혹은 남성을 대상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재판과 억울한 희생자들을 낳은 학살 행위들을 일컫는다. 초자연, 초과학적인 마술 등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하는 주장으로, 재판에 고발된 ‘마녀’는 실제 짓지 않았던 죄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다. 과학적 혹은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행위에 대한 근거들은 채택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목된 마녀’는 다수의 의심과 거짓 증언으로 인해 유죄로 추정되어 심판을 받았다. 이후 교황청의 요한 바오로 2세(1999)는 중세시대 때 자행된 마녀사냥, 종교재판 등의 역사적 물의에 대해 사죄했다[11]. 과거의 비합리적인 재판과 그로인한 억울한 학살 및 희생은 현대에서 반복되지 않지만,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에 대한 논의와 비판은 우리나라의 언론계에서 제기되고 있다[12-18].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이 과거의 원류와 일치하는 점은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명확한 근거 없이 의심만으로 죄인으로 취급해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이러한 낙인은 사법기관이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달리 사법적 판결 전에 미리부터 ‘죄인’으로 취급된다는 데 법적·윤리적 문제가 있다.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들로는 허위사실, 그리고 이를 비판의 과정이 없이 바로 받아들이는 군중의 무지, 유언비어 등을 들 수 있다[7].

2017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이슈가 되었던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사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거나 아내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와 그의 딸 김서연 양의 죽음에 관여했다고 여겨지는 의혹들이 여러 언론 매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를 소재로 한 영화의 개봉에서부터 온라인상의 의혹과 유언비어들이 다수 난립하게 되자, 서해순 씨는 직접 언론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변호와 입장 공개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추정 및 의혹 기사를 지속적으로 발간했으며, 동거인과의 관계,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사후 저작권료와 관련한 분쟁 등 사건과는 명확한 관계가 없는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 또한 이어졌다. 이에 의혹의 당사자였던 서해순 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딸의 사망에 대해 무혐의라는 결론이 나온 이후, 고 김광석 씨가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및 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19-21].

고 김광석씨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해인 2017년에 발생했던 서울시 240번 버스의 운전기사에 대해 억울하게 가해진 비난들에도 언론의 단정적 보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엄마의 아이가 버스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렸으며, 버스 기사는 엄마의 요구를 무시한 채로 다음 정거장까지 달렸으며, 엄마가 겨우 내릴 때 욕설 등을 했다는 의견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의 네티즌이 최초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버스기사가 무시를 하지 않고, 규정상 정거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차를 함부로 정차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해주었고, 아이가 밀려 내린 것이 아닌 자의로 내린 정황이 CCTV 기록을 통해 드러났으며 욕설 또한 없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언론은 실제 사실 관계의 파악조차 온전치 못하고 버스기사가 승객을 외면 및 욕설을 했다가, 아이의 나이가 4살이었다가도 이후의 기사에 7살이라고 표기하는 등 검증을 위한 신중한 보도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후 진상이 밝혀진 뒤에도 버스기사는 그동안 온라인 및 언론에서 입은 피해로 인한 심적 고통 및 충격이 커 휴직 계를 신청했다[22][23].

2017년 발생한 해당 사례들 이외에도 과거에도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2012년 발생한 채선당, 국물녀 사건 등은 왜곡된 사실로 기사들이 나타났고 논란의 당사자들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여론이 온라인상에 형성되었으나, 실제로 사건의 전말은 최초로 인식했던 상황과는 달랐다[24][25]. 이어서 2015년 발생한 세모자 사건의 경우 한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다수의 사람들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해 언론과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도 언론은 쉽게 이를 사실인양 보도했고 단정적인 문체로 기사를 작성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해당 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방영한 이후로, 언론사의 의심하는 태도는 급변해 의심 가던 인물들에 대한 비난과 단정적 보도의 방향은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혐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세모자의 어머니는 현재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이 선고 되었다

[26]. 그러나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와 의심 등으로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정정보도 등의 보상 및 피해구제 활동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행해지지 않았다. 각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후에도 고소 등을 통해 자력으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고, 이러한 피해들로부터 미리 자신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언론의 보도와 여론으로 인해 쉽게 무시당하게 된다.

또한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 그중에서도 선정적인 온라인 뉴스 매체의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어뷰징(Abusing) 현상을 들 수 있다. 온라인 뉴스의 어뷰징 현상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한정된 광고 트래픽을 가지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제목과 내용을 조금씩만 바꿔 자극적인 이슈의 기사를 반복해서 게시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를 언론의 취재 및 보도 목적이 아닌, 온라인 언론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트래픽을 확보하려 편법적인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뉴스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이 아닌 광고 수익만을 위한 이러한 행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검색에 그대로 유통되면 대상자들의 피해가 증가하며,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 신고 건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라인 언론사들이 광고수익을 위해 선정적인 주제들을 위주로 기사를 내고 또한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약간씩 바뀐 기사들을 반복해서 내는 행위들이 누적되는 이 현상이 사망, 폭행, 사고 등의 불분명하지만 관심을 끌기 좋은 의혹성 이슈와 만나게 되면 온라인상의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은 심화될 여지가 높으며 이런 경우 온라인 언론의 보도 행위는 사회감시라는 공적인 기능의 수행보다는 사익추구와 그를 위한 타인의 권익 침해라는 법적·윤리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27-29].

유사언론에 대한 규정과 비판, 그리고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규제的主張은 앞서 논의한 온라인 언론사들의 일탈적 행위들을 맥락적 배경으로 하여 힘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언론개정법 시행령의 취지 중 한 요소로써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10] 정작 유사언론의 개념에 대한 명확

한 학술적 정의와 학계간의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사언론의 개념과 이로 인한 피해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오고 있는 주요기관은 광고주협회를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다. 광고주협회가 출간해오고 있는 KAA저널 Voice of Korea Advertisers에 따르면 유사언론 행위에 대해 자극적 제목 등을 선정해 관련 없는 내용을 늘어놓거나 기업과 CEO를 상대로 부정적 기사를 써 이를 통해 광고 및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기성언론의 윤리의식의 부재와 기업이 쉽게 돈을 내어주는 소극적인 행태 등을 꼽았다. 또한 2012년 간행물에서는 비슷한 표현으로 사이버 언론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음해성 기사 등을 통해 기업에 광고 및 협찬 협박과 강매 등을 일삼는 매체를 일컫고 있다. 각 주장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결론적으로는 사이버언론과 유사언론 간 용어상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8][30].

실제로 국회입법 조사처의 한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언론과 유사언론 행위에 대해 개념적으로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범주에 따라 두 차원으로 나눠 설명하였다. 좁은 의미에서의 사이버 언론의 경우 광고주협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정적 기사를 활용해 기업에 협박, 광고의 강매 및 협찬을 획득하는 행위로 사실여부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이버언론에서는 상업적 이익에 기초한 기사 베끼기 행위로 앞서 언급했던 반복된 내용을 제목과 일부만 바꿔서 게시하는 뉴스 어뷰징 행위, 그리고 선정적 주제에만 집중하는 보도행태 등의 저널리즘의 기초를 손상시키는 행위들을 통틀어 지목했다[31].

언론사 및 기자들의 윤리적 보도행위를 주장하며 이를 위한 협력을 추구하는 기자협회의 출간지인 기자협회보 또한 본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노골적인 광고 및 협찬요구는 해당 기업의 부정적인 기사를 통해 거래된다. 신문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광고 매출이 하락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진 언론사가 기업을 협박하거나 아예 영업 및 홍보수단으로써 이용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론사들이 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대상은 기업

내 오너에 대한 비판으로, 해당 기업의 홍보팀에서 최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이슈에 대한 것이다. 현재는 과거 신문사들의 부수에 해당하는 온라인 매체사의 방문 및 구독수와는 상관없이 일단 포털 사이트에 검색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 그 파급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군소 언론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압박을 쉽사리 무시하기 어렵게 되었다. 포털에 검색되지 않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직접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서 금전적 지원에 대한 압박을 보낸다고 설명했다[32].

## 2. 유사 언론 행위의 유형

표 1. 언론 및 기관 발행물의 설명을 기준으로 분류한 유사언론 행위의 유형

유사언론행위 Type	내용
A	기관의 부정적 기사를 활용해 광고 및 협찬 등을 강매, 협박하는 행위[30][32]
B	상업적 이익에 기초한 기사 베끼기 및 반복된 내용에 대한 어뷰징 행위[30][32]
C	선정적 이슈에 대한 속고 및 명확한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기사를 게시해 트래픽 등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27][28][29]

온라인 언론사들에 대한 유사언론 행위에 대한 비판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과거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당시의 언론자유의 통제와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신군부 정권의 탄생 당시 민주주의적 절차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수립한 권력층은 비판으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에 통제를 가했다. 그러나 유사·사이버 언론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과 온라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통제를 하려는 의지는 실제 발생하는 일부 비윤리적 언론 행태로부터 기인한 폐해에 그 계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라는 기존의 권리와 충돌하는 면이 다소 있더라도 불합리한 주장이라 쉽게 폄하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제대로 된 학술적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에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언론사를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할 때, 언론이 공인 및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등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의혹을 보도하거나 추후에 사실이 아니었

다고 하더라도 악의나 비방 같이 해당 언론사의 고의가 검증되지 않는다면 언론의 공적 기능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독려하는 측면에서 언론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언론 법은 발달해 왔다[1-3]. 언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법률들은 언론의 자유로운 고발 및 의혹 제기 활동을 고무시킨 반면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해야 할 책임과 보도가 의혹 당사자에게 미칠 피해를 숙고해야 할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허위사실이나 단정적인 편집 등으로부터 피해 받은 사람의 권리를 회복할 방법은 정정보도, 보상금 정도에 그쳐왔다[33][34]. 이렇듯 언론의 개인 대상으로 한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활동들을 무분별하다고 규정하고 이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실제 법 개정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발현되고 왔다[43].

### III. 결론

#### 1. 전통적 언론의 자유 권리와 법적·윤리적 논쟁 요소의 잔존

그러나 신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5년 11월 중순 이후로 이에 대한 언론계의 비판이 다량 제기되었다.

상대적으로 외면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군소 독립 언론사나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지의 경우 취재 및 편집 기준에서 부족한 인원이라도 기사의 양은 적을지언정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언론사들이 주목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이전부터 이슈와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안적 성격을 가진 매체들이 분명 존재해 왔음에도, 획일적인 인원기준을 강요함으로써 언론으로써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었다[35-37]. 이후 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 시민연대, 정의당 등의 각 언론 및 시민단체를 비롯한 총 63인의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인터넷신문의 기준 인원을 상향한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38]. 그 결과 2016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약 1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시행 및 유

예기간을 가졌던 온라인 뉴스사들에 대한 인원 기준의 규제는 그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이며, 종이 신문 등 기타 매체에도 인원에 따른 기준에 의해 규제한 바가 없음에도, 온라인 매체에 한해서 차별적인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상시고용 및 확인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39]. 앞서 지적한 온라인상의 유사언론 행위가 피해를 입힐지언정, 인원이나 언론사의 규모라는 획일화된 기준에 의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중단되었고 현재는 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의 일탈적 행위로 자정적 노력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되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적·윤리적 근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1971년 수정헌법을 제정하며 개정 제 1조에 의해서 언론자유가 보장되었고, 우리나라는 헌법 제 13조에 그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론의 보도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목적이나 진실성(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설사 그것이 다소 과할지라도 언론사에 일반적으로 책임을 물지는 않고 있다[40].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측과 명예권과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고, 유언비어를 비롯한 언론의 무분별한 활동을 규제하자는 상충하는 각 주장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보에 의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지만 공익이 아닌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취재하거나 의혹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왔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공익이 아닌 사람의 사적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3][41].

언론이 자유권에 기대어 피해자의 명예권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일부의 현상과 이에 대한 비판은 실존하고 있는 언론 윤리의 이탈적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논의 자체

또한 부족하다. 그러나 공인을 넘어 민간인으로까지 확대되는 현대판 마녀사냥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7][12][13][17][18], 유사언론 행위 또한 그러하다[8][9][35].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뒤에 사후대책을 취하는 것 보다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방치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공적인 목적이 아닌 언론사의 이익이나 선정적 이슈에 대한 추구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보도가 난립한다면 이는 단순히 언론이 사회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만 보기는 어렵다. 이는 법적·윤리적으로 어긋난 언론의 자기합리화에 준한다.

지금까지 자정적 노력이나 언론인들이 아직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윤리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간주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윤리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자는 자구적 노력이 이미 있어왔기 때문이다.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언론사 및 기자들로 하여금 공정한 보도와 기자의 직업윤리에서 벗어난 비리행위를 막고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1994년도부터 마련해 왔다. 해당 윤리강령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과 기자로 하여금 품위를 유지하고, 정당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고와 판매를 강요하거나 대가성으로 받지 말 것을 제안하고 있다[42].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보도할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확대 재생산 하곤 한다. 공론화하기 전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충실히 검증해야 함에도, 빠른 피드백과 관심을 끌기위해 이를 생략하고 있다. 자극적 내용으로 관심을 얻기만 중요시 여기는 황색 저널리즘 같은 태도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여론을 부추기는 것이다[12][14][15].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자정적 노력에 맡겨온 언론의 일탈적 행위는 이제 강제력을 갖춘 윤리 및 법률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언론에 면책 특권을 부여

하는 공익적 측면과는 별개로, 이탈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제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요구된다.

## 2. 제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공공 기관이나 매체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유사언론 행위에 대한 엄밀한 윤리적, 법적 기준과 실제 현상에 대한 정책적 접근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는데 유형화 혹은 학술적 연구의 절대량 자체가 부족하므로 각 학계의 심도 깊은 연구들을 진행해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 학술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현대사회의 마녀사냥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이슈 그리고 사생활의 보호 사이에 명확한 윤리적 구분과 법적 세부 항목을 면밀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각 사안별 중재 혹은 재판 결과에만 의존하는 형태로써는 사후조치에 그친다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사(私)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시급하다.

## 참고 문헌

- [1] 장호순,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월호, pp.237-258, 2001.
- [2] 차용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3호, pp.414-445, 2002.
- [3] 손형섭, “프라이버시권·명예권·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언론과법, 제7권, 제1호, pp.309-344, 2008.
- [4] 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 [5] 제 27조 제 4항, 형사소송법 [법률 제13720호, 2007.6.1.]
- [6] 제 307조, [법률 제13720호, 2016.1.6.] 제 325조)
- [7] 성동규, 엄선규, “온라인 마녀사냥에 관한 근거이

- 론적 방법론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 30권, 제1호, pp.145-189, 2013.
- [8] 최승노, “언론 망치고 기업 명들게 하는 유사언론 행위,” KAA저널, 7·8월호, 2014.
- [9] 유재형, 광고주협회, 유사언론행위 피해실태조사 결과 발표, KAA저널, 5·6월호, 2015.
- [10]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 2015. URL : <http://www.mcst.go.kr>
- [11]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0307\\_memory-reconc-itc\\_en.html](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cti_documents/rc_con_cfaith_doc_2000307_memory-reconc-itc_en.html)
- [1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90141.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90141.html), 2017.09.14.
- [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914000093>, 2017.09.14.
- [14]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3011>, 2017.11.15.
- [1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2226.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2226.html), 2017.09.16.
- [1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095661>, 2017.11.10.
- [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59>, 2017.09.22.
- [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4\\_0000095909&cID=10201&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14_0000095909&cID=10201&pID=10200), 2017.09.14.
- [19] [http://www.ytn.co.kr/\\_sn/0117\\_201712081130505778](http://www.ytn.co.kr/_sn/0117_201712081130505778), 2017.12.08.
- [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41120001&code=940100#csidxae3c107e30a9a7f9f76841f14b3588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41120001&code=940100#csidxae3c107e30a9a7f9f76841f14b35889), 2017.11.14.
- [21] <http://www.hankookilbo.com/v/a15fbfc776da441fbc7875d23c82b342>, 2017.12.07.
- [22]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28999>, 2017.09.17.
- [23] <http://news.donga.com/3/all/20170914/86318092/1#csidxfd02a76ff5bf3393888706ada9cac7>, 2017.09.14.
- [2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22906072300847>, 2012.02.29.
- [2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525606599433144&mediaCodeNo=257&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525606599433144&mediaCodeNo=257&OutLnkChk=Y), 2012.02.22.
- [26]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51212235357607155101\\_1&md=20151213000312\\_J](http://news.g-enews.com/view.php?ud=20151212235357607155101_1&md=20151213000312_J), 2015.12.12.
- [27] 최수진, 김정섭,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 [28] 홍문기, 김병희, “인터넷 뉴스 어뷰징의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8권, 제2호, pp.112-147, 2016.
- [29] 김병희,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개발에서 기사 어뷰징 방지를 위한 영향요인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1권, 제3호, pp.47-89, 2015.
- [30] 이수지, “한국광고주협회 반론보도닷컴 통제 사 이비언론 적극 대응,” KAA저널, 09·10월호, 2012.
- [31]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비언론’의 쟁점 및 과제, 2015. URL : <http://www.nars.go.kr>
- [32]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6013>, 2015.03.19.
- [33] 진찬희, 지용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159-168, 2012.
- [34] 전광백,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리나라와 미국 관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pp.123-150, 2011.
- [3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0411067829473&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2016.07.05.
- [3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86>, 2016.03.29.
- [37]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8080.html#csidx252a06086112ff9afb6016c40c0d98a>, 2016.06.13.



